

믿을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CLFA

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 13층(남대문로5가, 단암빌딩) / TEL 02)3487-5800 / FAX 02)6670-9650 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조사-113

발신일자 : 2016. 11. 29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주요내용 안내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금융위원회의 **대출계약철회권**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은행 이외 타 금융업권과 함께 오는 **12월 19일부터 시행***됩니다.

※ 은행권: 10.28부터 순차적 시행 / 은행 외 타 금융업권: 12.19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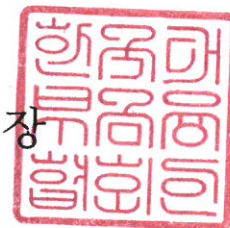
3.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철회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주요내용 1부.

(불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).

문의 : 기획조사부 한성택 과장(02-3487-5800 내선 115). 끝.

한국대부금융협회장



수신처 : 골든캐피탈대부, 넥스젠파이낸스대부, 리드코프, 미즈사랑대부, 밀리언캐쉬대부,
바로크레디트대부, 산와대부, 스타크레디트대부, 아프로파이낸셜대부,
애니원캐피탈대부, 앤알캐피탈대부, 에이원대부캐피탈, 엘하비스트대부, 원캐싱대부,
웰컴크레디라인대부, 유미캐피탈대부,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, 콜렉트대부, 태강대부,
헬로우크레디트대부 대표이사

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주요내용

□ (시행대상) 신용대출 상위 20개사(별첨1. 명단 참조)

□ (시행시기) 2016년 12월 19일

□ (적용대상) 개인 대출자

□ (적용상품)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일정규모 이하* 대출 상품

*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

- 고객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고, 최초 대출계약 체결 시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

□ (내부업무처리) 일반적인 완납고객과 동일하게 처리

- 철회권 행사를 위해 원리금 상환 시 일반적인 완납고객과 동일하게 제반 업무 수행
 - 계약서 3년간 보관, 전산 상 고객 및 거래정보 분리보관 등 채무완납과 동일하게 처리
- 다만, 철회권 행사정보는 동일 고객의 신규대출 신청 시 심사자료로 활용 금지
 - 철회권 행사제한 사유 확인 용도로 제한하여 이용 가능.

□ (대출기록 삭제) 철회권 행사 시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출 기록 삭제

* 철회권 관련 신용정보원 업무처리는 별첨2. 한국신용정보원 공문 참조

□ (행사절차) 대출계약 후 14일(역일 기준[calendar day]) 이내 철회 의사표시 및 대출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

○ 철회 가능 기간

- 고객 대출금 수령일 또는 (비대면거래 시) 대부금융사 계약서 발송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(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)

○ 철회의 의사표시

-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부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, 우편, 콜센터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

* 우편, 콜센터,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,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

○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

-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 이자 및 대출을 위해 대부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* 상환'

*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 등

□ (남용방지) 개별 금융회사 대상 "2회/년", 전체 금융업권 대상 "1개월" 초과 철회권 행사 제한 가능

* (대부금융사) 남용방지 위해 철회권 행사 정보 1년간 보관 가능, 단 동일 고객의 신규대출 심사 시 철회권 정보 활용 불가.

* 전체 금융업권 철회권 행사 정보는 CB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

□ 별첨 자료

1. 철회권 시행대상 대부금융사 명단 1부.
2.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관련 전산변경 안내 1부.
3. 은행권 여신거래기본약관(철회권 발취) 및 철회신청서 1부.

별첨1.

☐ 철회권 시행대상 대부업자

구분	대상 대부업자
1	골든캐피탈대부
2	넥스젠파이낸스대부
3	리드코프
4	미즈사랑대부
5	밀리언캐쉬대부
6	바로크레디트대부
7	산와대부
8	스타크레디트대부
9	아프로파이낸셜대부
10	애니원캐피탈대부
11	앤알캐피탈대부
12	에이원대부캐피탈
13	엘하비스트대부
14	원캐싱대부
15	웰컴크레디라인대부
16	유미캐피탈대부
17	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
18	컬렉트대부
19	태강대부
20	헬로우크레디트대부

한국신용정보원

수 신 : 대부업협회장

제 목 :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관련 전산변경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제2016-8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2016.10.24.)에서 의결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산변경이 있으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☐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해지사유코드 신설

○ 개정내용 : 개인대출정보의 계약철회 거래 추가(해지코드, 철회일자)

○ 관련 거래

구분	종별 코드	업무(거래) 구분 코드	비고
온라인(정정)	0500/0510	552	레이아웃 변경 없이
파일전송	-	DL9033/DL9144 BF9189(신용조회회사)	“항목의 값” 추가

○ 관련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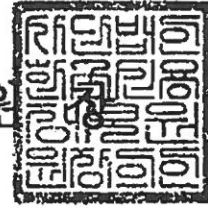
- 테스트 일자 : 2016. 12. 01.(목) 부터

- 시행일 : 2016. 12. 19.(월) 07:00 부터

※ 관련 설계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(<http://nkfb.cif.or.kr>)에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한국신용정보원



담당자 이선릉 IT개발실장 정권수^{11/21}

[합의]

문서번호 IT개발실-2232 (2016.11.22.)

우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(명동1가 1-1) / <http://www.kcredit.or.kr>
전화 02-***** / 전송 02-***** / *****@kcredit.or.kr

별첨3.

□ 은행권 여신거래기본약관(철회권 발취) 및 철회신청서

○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- 철회권 관련 사항 발취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가계용)

<전략>

제4조의2(대출계약 철회)

-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, “철회기한”이라 한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 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
 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
 3.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(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)
-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 1.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 2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
 3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
- 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
- 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1.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 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
<후략>

○ 은행권 철회신청서 예시

대출계약 철회신청서

■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연락처			

■ 대출계약 내용

은행명	은행	지점명	지점
대출상품명			
대출계좌번호		대출금액	
대출실행일		대출금액 철회기간	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(실행일 미포함)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의2에 따라 본인과 귀 은행간 체결한 대출 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하며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급한 부대비용 차액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금계좌		계좌번호	
예금주			

- 대출계약 철회는 『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』 제4조의2에 의해 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 전액 상환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- 대출계약철회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※ 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